

고성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846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3. 11

고성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4. 3. 11

다. 상정·의결일자 : 2004. 3. 19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2. 제안이유

- 고성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위탁하여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의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수 있는 적용 범위를 군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지역으로 함(안 제3조)

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계약일 1월 이전에 군 공보·신문·방송 및 고성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장애인 등이 설치·계약을 신청할 경우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함.

(안 제6조)

라. 사업자의 의무 등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사용료의 징수 및 방법은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함.

(안 제9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은 고성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때에는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의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 노인복지법 제25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때에는 65세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있고
- 모·부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안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부자가정 또는 모·부자 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2003년도에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음.
- 위와같이 관련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에 미루어 볼때 우리군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 조례안 제2조(용어의 정의) 공공시설에 의회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만약, 포함되어야 한다면 의회 청사안에 설치한 자동판매기에 대하여 조례안 제4조(사전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의회와 사전협의 또는 동의절차없이 장애인등에게 위탁(계약) 하고자 할 경우 적정성 등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조례안 제2조중 공공시설 이라함은 군, 의회, 군소속기관의 청사 등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 답 : 예.
- 문 :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계약기간은 2년내에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당초 3회에서 2회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 답 : 2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 :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에 군수가를 군수 및 의장(이하 “군수”라 한다.)으로 하고,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중 군수를 군수·군의회 의장으로 자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 답 : 그렇게 하겠습니다.

6. 토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4. 3. 1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